

붙임1

약사법 개정법률(안) 주요 내용

명 칭	“안전상비의약품”
의약품 분류체계	○ 현행 2분류 체계 유지(전문/일반),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 의약품 지정
대상의약품	○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○ 해당 품목의 성분, 부작용, 함량, 제형, 인지도,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(20개 품목 이내)
판매장소	○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○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 고려 ○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곳
등 록	시·군·구청장에 등록된 이후 판매
교 육	○ (사전) 사전 교육 의무 ○ (사후) 필요 시 교육(종업원 포함)
준수사항	○ 시설 및 의약품 관리, 종업원 감독, 1회 판매 수량, 연령 제한 등
표시기재	일반(안전상비)의약품
등록취소	○ 허위 등록, 위해의약품 회수·폐기명령에 불응, 판매질서 위반, 준수사항 위반 등 * 등록취소 후 1년 이내 재등록 불가
과태료 (100만원 이하)	○ 폐업·휴업·재개 미신고, 교육 미이수, 준수사항 위반
기 타	○ 현행 법률 준용 - 구분진열 등 판매질서(제47조제1항) - 약국외 판매자에 의약품 공급시 공급내역 보고 (제47조의2제2항) - 위해의약품의 회수(제39조) 및 폐기(제71조) - 보고, 검사 명령(제69조)